노무법인 로율

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, 1802호 (공덕동, 르네상스타워)

Tel 010) 2890-7948, 02)713-2022 Fax 0303) 3444-2025

smilejhjh@hanmail.net

2026. 11. 16.

■ 제 목 : '가짜 3.3' 위장고용 · '사업장 쪼개기' 기획감독 실시

■ 내용

'26. 11. 16.부터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'가짜 3.3 위장고용 ·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'의 대상과 점검 사항, 사업장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■ 감독 개요

• 감독 기간 : '26. 11. 16.부터 약 2개월

• 감독 대상 :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

- 업종 : 음식 · 숙박업, 제조업, 도 · 소매업, 시설관리,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

- 규모 :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,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심

• 대상 선정 : 국세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, 근로복지공단 · 국민연금공단 가입 정보, 고용보험 정보, 신고사건 · 감독이력, 구인광고 모니터링, 익명 제보를 종합 검토

• 처리 방침 :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

-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: 근로복지공단 · 국민연금공단에 통보

-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 : 국세청에 통보

■ 주요 점검 사항

구 분	내 용	관 련 조 문
'가짜 3.3' 위장고용	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(3.3%)를 납부하는 계약	「근로기준법」 제2조
'사업장 쪼개기'	1명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	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

■ 유의사항 : 근로자 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 판단

1.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

- 계약 명칭(프리랜서, 위촉, 도급 등)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 (대법원 2004다29736 판결)
-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,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· 감독을 받는지, 근무시간 ·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등을 종합 고려
- 기본급 고정 여부,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,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3.3% 사업소득세 납부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음

2.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7조의2)

-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인력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
-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 가산수당, 연차유급휴가,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됨

■ 참고 : 지난해 '가짜 3.3' 위장고용 기획감독 결과

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'가짜 3.3' 위장고용 기획감독에서 72개소, 근로자 1,070명에 대한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 8,5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 · 시정됨.

아울러 고용노동부는 '27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공인노무사 등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 · 지도하고,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임.

■ 시사점

- 사업소득자 계약 현황 점검 : 3.3%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력 중 출퇴근 시간 ·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

- 상시 근로자 수 재산정 :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, 5명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 · 연차유급휴가 등 적용 여부 확인

• 사업장 분리 운영 점검 : 사업자등록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인사 · 노무관리, 근무장소, 회계 등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

•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, 근로소득세 신고 정정, 미지급 법정수당 정산이 필요함

■ 참 조

고용노동부('26. 11. 13.), 「'가짜 3.3' 위장고용, '사업장 쪼개기'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」